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행정기구·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규정(안 제2조)

- 총 정 원 : 845명 → 881명 (증 36명)
- 집행기관 : 827명 → 863명 (증 36명)
- 의회사무기구 : 18명 → 18명

※ 신규정원 승인 내역 (단위:명)

구 분	계	일 반 직							기능직	비고
		소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	
총 계	36	34	1	3	8	8	1	13	2	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인구증가와 지역개발등 행정수요 급증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와 정원이 관계법령 절차에 의거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기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당초 대비 36명이 증원됨.

-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,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『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』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.
-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기구와 정원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8월 27일자로 행정자치부 승인이 경기도를 통해 접수되었으므로 법적절차나 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지방자치법

제 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제 14조 (표준정원의 책정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·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여부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또는 9월에 하여야 한다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파주시 행정기구가 『1실·2담당관·1과』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정원 36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『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』과 같이 기구 및 사무의 조정·배분에 따라 정원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,
- 그 세부적인 사항은 『파주시 규칙』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용타당성에도 문제점이 없음.

※정원 승인내역(요약)

직 위	직 명(직급)	정원	비 고
기획관리실장	지방서기관(4급)	1명	기획관리실
감사담당관	지방행정사무관(5급)	1명	“
정보·통신담당관	지방행정·전산사무관(5급)	1명	“
징수과장	지방행정사무관(5급)	1명	총 무 국
경영지원담당	지방행정주사(6급)	1명	기획담당관실
민원조사담당	“	1명	감사담당관실
전산통계담당	“	1명	정보통신담당관실
인사조직담당	“	1명	총 무 과
수질보전담당	지방화공·환경주사(6급)	1명	환경보호과
에너지관리담당	지방행정·전기주사(6급)	1명	기업지원과
노사지원담당	지방행정주사(6급)	1명	“
하수도관리담당	지방토목주사(6급)	1명	상하수도과
	7급(행정3,토목2,임업1,화공+환경2)	8명	
	8급(행정1)	1명	
	9급(행정9,전산1,세무1토목+건축1,화공1)	13명	
	기능10등급(사무보조)	2명	
합 계		36명	